의안번호	제 206 호
의결 연월일	2005. 1.29

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 ·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05. 1.18 예 산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05. 1.18

다. 상 정 일 자: 2005. 1. 24

제121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건설과장 : 이찬용)

가. 제안이유

○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분리 운영하여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『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』의 제정으로 『재난관리기금』으로 통합 일원화됨 따라 『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』를 제정 시행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・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기금의 운용・관리는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관리하여야 하고 법정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・관리하도록 함 (안 제3조)
- 기금의 용도 규정 (안 제6조)
-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,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으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을 적정히 관리토록 함 (안 제9조)
-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둠 (안 제10조)
-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함 (안 부칙3호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이용억)

-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『재난관리기금』으로 운용・ 관리코자하는 것으로써 각 조별로 검토한바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
-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4. 질의 · 답변요지

ㅇ생 략

- 5. 토론 요 지
- 0 없 음
- 6. 심 사 결 과
- 원 안 가 결
- 7. 소수의견 요지
- 이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이 없 음